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3475
등록일자	2015.1.28.
결재일자	2015.1.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철규	정재하	박선옥	전결 01/28 김창현		
협조자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

2015년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지원대상** : 6,330가구(수급자 6,093가구, 저소득보훈대상자 237가구)
- 지원내용**
 - 교육경비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고등학생
 - 시기 및 기준
 - ▶ 중·고등학생 교통비 : 1인당 311,040원(연4회 분할 지급) 3/6/9/12월
 - ▶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 1인당 300천원(동복 200천원, 하복 100천원) 2/4월
 - 명절위문금
 - 시기 : 연 2회(설, 추석)
 -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당 3만원
 - ※ 구비로 별도 수급자 3만원, 차상위(장애·자활) 복지수급자가구당 5만원 지급
 - 월동대책비
 - 시기 : 연 1회(11월)
 - 대상 및 기준 : 기초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당 5만원
- 소요예산** : 시비 998,681천원 (※명절위문금 구비 458,180천원)

강 남 구
(사 회 복 지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위해 법정급여외 계기성 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자활) 수급자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〇)</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〇)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〇)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2015년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수급자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관련 경비, 명절위문금 및 월동대책비 등 계기성 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시 복지정책과-1636(2015.1.22.)호/ 2015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계획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전 또는 물품 지원

II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6,330가구)
- 기초수급자 : 6,093가구(시설수급자 제외) (단위:가구,명)

총 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비 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768	9,405	5,540	8,965	228	440	'14.12.31일 기준

- 중·고 재학생 : 770명(중학생 323명, 고등학생 447명)

○ 저소득 보훈대상자 : 237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대상별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 원 기 준	비 고
교육경비	기초수급자 자녀 (해당 학생이 있는 일반교육특례 가구)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 6월, 9월, 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	
		교복비(중고등 신입생) (2월, 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200,하복100)	
명절위문금	기초수급자(일반특례)	설날, 추석 위문금 (2월, 9월)	가구당 연 60천원	
월동대책비	기초수급자(일반특례)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2014년 부가급여 지급현황(시비) ----- 891,666천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시지원시기)	지원액	비 고
교육경비	2,849명 (평균 712명)	중·고생 교통비 (2, 5, 9, 12월)	225,516천원	
	신입생 349명 (평균 175명)	중·고 신입생 (2, 4월)	51,400천원	
명절위문금	10,417세대 (평균 5,209세대)	설날, 추석 위문금 (1, 9월)	322,500천원	
월동대책비	5,824세대	월동대책비 (11월)	291,250천원	

※ 2014년 명절위문금 구비 지급 현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액	비 고
명절위문금	12,398세대 (평균 6,199세대)	설날, 추석 위문금 (1, 9월)	404,940천원	기초수급자, 차상위자할· 장애인

III 추진계획

교육관련 경비 지원

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지원대상 : 일반수급자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중·고 신입생

※ 특례수급자(교육급여 특례수급자 제외)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천원, 하복 10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2월 (동복구입비), 4월 (하복구입비)

- 동복 : 2.27(지급기준일 2.13 이후 2.28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하복 : 4.30(지급기준일 4.14 이후 4.30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중·고등학교 입학등록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77,100천원

- 300,000원×257명×1회 = 77,100,000원

② 중·고등학생 교통비

○ 지원대상 : 일반수급자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특례수급자(교육급여 특례수급자 제외)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11,040원

※ 교통비 : 720원(교통카드 사용기준)×2회× 216일 = 311,040원

※ 지원일수(216일) 산출내역 : 190일(권장 수업일수)+{52일(연간 토요일 일수)×50%}

※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휴학,자퇴,퇴학 등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지원액은 월할계산 반납처리

< 교통비 지원일수 산정방법 >

- 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등교일수 감소 (240일 ⇒ 190일)
- 법정 수업일수(주5일제 전면 실시) : 연 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 '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권장 수업일수 : 연 190일 이상
- 방학기간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므로 학교별로 동일하지 않음
-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토요일프로그램(월 2~3회 시행) 적극 참여 권장코자 연간 토요일(52일)의 50% 교통비 지원

○ 지원시기 : 연 4회 분기별 지급 (3, 6, 9, 12월)

구 분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월말)
중·고등학생 (교통비)	311,040원 (720원×2회×216일)	99,360원 (720원×2회×69일)	64,800원 (720원×2회×45일)	97,920원 (720원×2회×68일)	48,960원 (720원×2회×34일)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239,501천원

- 720원×770명×2회×216일 = 239,500,800원

□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일반 · 특례) 가구

※ 입양대상아동(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6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 (설 · 추석, 각각 30천원씩)

- 설날(2.19) : 2.12(지급기준일 22 이후 2.19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9.8) : 9.21(지급기준일 9.14 이후 9.27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365,580천원

- 30,000원×6,093가구×2회 = 365,580,000원 (시비 100%)

※ 명절위문금 구비 별도지원 (458,180천원)

예산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액	비고
구비 100%	기초수급자(일반·특례) 차상위계층(장애·자활)	기초수급자 연 60천원 차상위계층 연 100천원	30,000원×6093가구×2회 = 365,558,000원 50,000원× 926가구×2회 = 92,600,000원	

□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일반·특례) 6,093가구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10~12등급)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237가구 내외)

※ 추천요청(시 → 서울지방보훈청, 10.15) ▶ 명단통보(보훈청 → 시, 11.5)

▶ 자치구 통보(시 → 구, 11. 9) ▶ 자격확인 후 지급(11.17)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중복지원 안됨) 및 타 시도 전출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50천원

○ 지급일자 : 11.17(지급기준일 11. 1 이후 11.17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기준일 11. 1이후 11.17까지 타 시도 전출 및 사망자 지급 제외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316,500천원

- 50,000원×6,330가구×1회 = 316,500,000원

□ 예산과목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IV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관리 철저

- 중·고 신입생 등록확인 및 중·고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재배정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보고
- 급여개시일 등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2015. 7. 1.)에 따라 지원대상자인 기초수급자 자격구분이 다양화되고 대상인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2015. 하반기에는 부가급여 지원 개선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급여별 추진일정

구분	사업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 (예산요청)	예산 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보훈청)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상 반 기	중·고 신입 교복비	동 복	'15. 2.13	'15. 2.17	'15. 2.24	'15. 2.27 (신입생 등록 확인 후)	'15. 3. 6까지
		하 복	'15. 4.14	'15. 4.17	'15. 4.24	'15. 4.30 (재학 확인 후)	'15. 5. 8까지
	중·고 교통비	1분기 (3~5월)	'15. 3. 1	'15. 3. 5	'15. 3.15	'15. 3.20	'15. 3.31까지
		2분기 (6~9월)	'15. 6. 1	'15. 6. 5	'15. 6.15	'15. 6.19	'15. 6.30까지
	명 위 문 품 비	절 비 설(2.19)	'15. 2. 2	'15. 2. 4	'15. 2. 9	'15. 2.12	'15.2 .27까지
하 반 기	중·고 교통비	3분기 (9~11월)	'15. 9. 1	'15. 9. 4	'15. 9.14	'15. 9.18	'15. 9.25까지
		4분기 (12~2월)	'15.12. 1	'15.12. 4	'15.12.14	'15.12.18	'15.12.28까지
	명 위 문 품 비	절 비 추석(9. 27)	'15. 9.14	'15. 9.16	'15. 9.18	'15. 9.22	'15.10. 8까지
	월 동 대 책 비	겨울 철 (11월)	'15.11. 1	'15.11. 5 ·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 추천)	'15.11.12	'15.11.17	'15.11.27까지

※ 상기 일정 및 하반기 지원계획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 시행될 수 있음

붙임 : 서울시 부가급여 지원계획 1부. 끝.